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선정의견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7. 7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7. 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1. 7.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안이유

○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 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300톤 이상 소각 시설의 경우 직·간접영향권(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2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현행 협의체구성은 5인(시의원 3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영향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 주민이 협의체위원으로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1. 선정요구인원 : 1인(주민대표 1인)

2. 근거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선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대장동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요경력	주소	연락처	비고
방영석	57. 9. 24	남	-	오정구 대장동 681	673-3477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간

의안번호	제509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7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300톤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 직·간접영향권(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2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현행 협의체구성은 5인(시의원 3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영향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 주민이 협의체위원으로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선정요구인원 : 1인 (주민대표 1인)
2. 근거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근거 및 임무

1. 주변현황

-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택 2세대 존치

2. 협의체위원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인(주민대표 : 1인)
- 임 기 : 협의체위원 임기는 2년으로(잔여기간)

3. 구성방법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주민대표 1인을 협의체위원으로 구성

4. 임 무

-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

5. 폐기물소각시설주변지역 거주현황

-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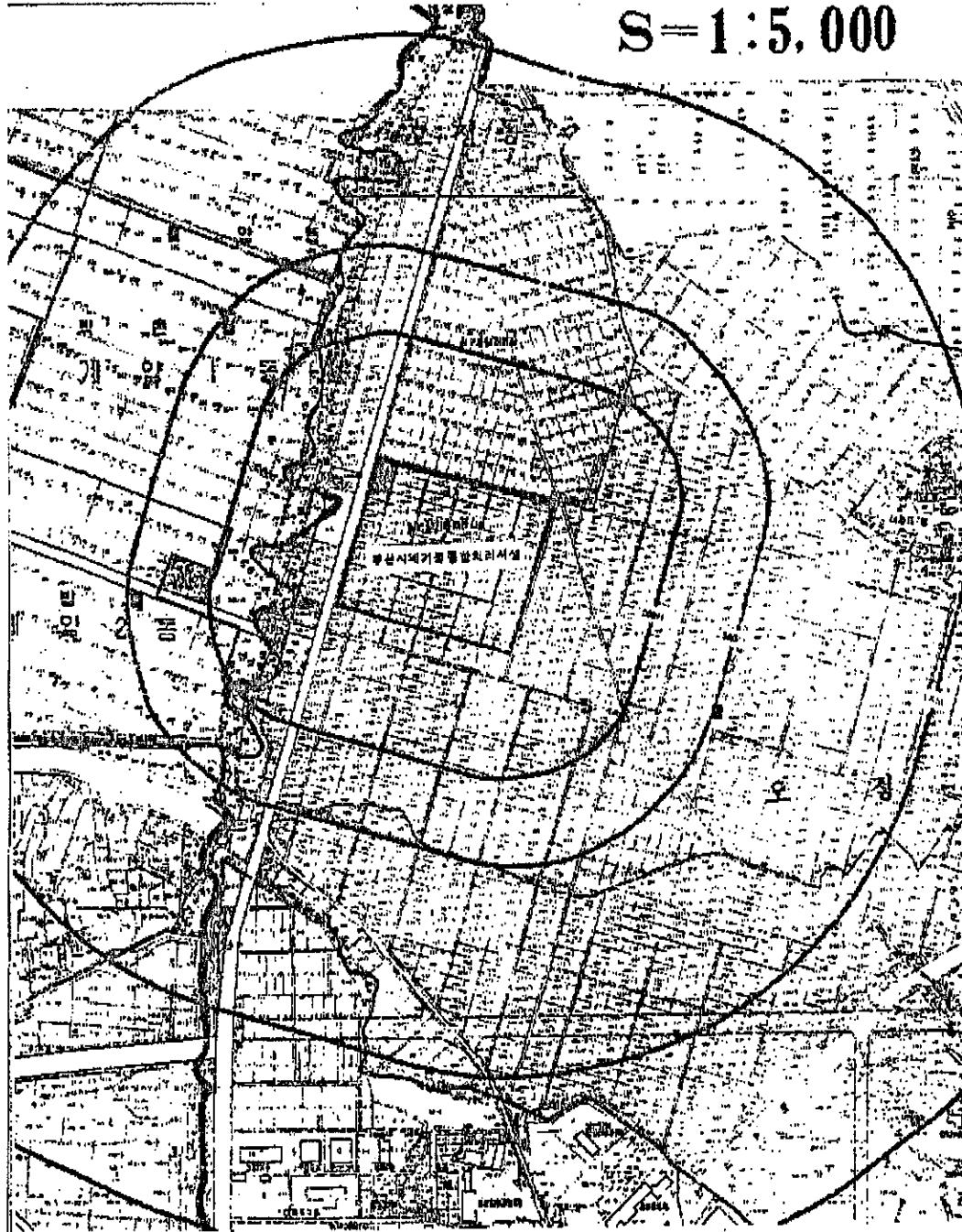
6. 관련법규 사본

- 별첨 2

첨부 1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대장동소각장) 주변 현황도

S=1:5,000



廢棄物處理施設設置 촉진 및 周邊地域지원등에 관한 法律
(法律 · 施行令)

1999. 7

環 境 部

法 律	施 行 方 式
<p>第3章 廢棄物處理施設 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p> <p>第17條(周邊影響地域의 결정·고시) ①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이 공고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으로 인하여 環境상 영향을 받게 되는 周邊地域(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이사를 지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p> <p>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法 律	施 行 令
<p>②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邊影響地域을 결정·告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住民支援協議體(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專門研究機關으로 하여금 環境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支援協議體가 周邊地域의 環境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關係專門家의 檢討意見書로 대체할 수 있다.</p>	<p>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p> <p>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法 · 律				施 行 令
[별표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과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이상	15인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미만	11인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경원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 고 :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각 4인과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부천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폐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폐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폐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 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폐비화·사료화 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 (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전까지 5회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임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죄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